

## 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

「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오산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4년 2월 23일

오산시의회의장

### 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송진영 의원 발의)

#### 1. 제안이유

- 청소년시설의 위탁 및 재계약 기간을 확대하여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상담 및 심리 지원과 다양한 프로그램 평가 및 개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.
- 청소년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「청소년 기본법」과 같게 규정함.

#### 2. 주요골자

- 청소년시설의 위탁기간 및 재계약 기간을 각각 “3년”에서 “5년”으로 변경(안 제9조)
- 청소년지도위원 결격사유 변경(안 제41조)

### 3. 조례안 : 붙임

### 4. 의견제출

- 제출기일 : 2024년 2월 28일까지
-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오산시의회 홈페이지 등
- 제출서식 :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  
(오산시의회 홈페이지>알림마당>입법예고>공지)
-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연락전화번호, 의견
- 제출기관 : 오산시의회(전문위원실)
  - 우편번호 : 18132
  - 주 소 : 오산시 성호대로 141(오산동, 오산시의회)
  - 전 화 : 031)8036-8033
  - 전자메일 : aragu@korea.kr

## 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본문 중 “3년”을 각각 “5년”으로 한다.

제31조 중 “담당주사가”를 “담당팀장이”로 한다.

제41조제2항 중 “금치산자·한정치산자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”을 “법 제27조제2항에 해당하는”으로 한다.

제45조제2호 중 “청소년보호법”을 “「청소년 보호법」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탁기간에 관한 경과규정) 제9조의 개정사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위탁하는 청소년시설부터 적용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위탁기간) 청소년시설의 위탁기간은 <u>3년</u>으로 하며, 평가실적이 우수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오산시청소년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<u>3년</u> 기준으로 재계약을 할 수 있다. 다만, 평가단의 구성 및 평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9조(위탁기간) ----- ----- <u>5년</u>----- ----- ----- ----- <u>5년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31조(간사 및 서기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 <u>담당주사</u>가 되고 서기는 청소년업무 담당자가 된다.</p>	<p>제31조(간사 및 서기) ----- ----- ----- ----- <u>담당팀장이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41조(지도위원의 위촉) ① (생략) ② 지도위원을 위촉할 때 <u>금치산자·한정치산자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</u>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.</p>	<p>제41조(지도위원의 위촉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<u>법 제27조제2항에 해당하는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45조(지도위원의 해촉) 시장은 지도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</p>	<p>제45조(지도위원의 해촉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<p>1. (생략)</p> <p>2. <u>청소년보호법</u>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종사자 및 유해한 행위자</p> <p>3. ~ 5. (생략)</p>	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「<u>청소년 보호법</u>」 ----- ----- -----</p> <p>3. ~ 5. (현행과 같음)</p>
---	---